



8-차-2.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

■ 공시지침

【공시기관】 : 대학

【공시시기】 : 2023년 4월(실시 현황), 8월(이용 현황)

【공시내용】 : 2023년 1학기 등록금 납부제도 및 이용학생 현황

【공시양식】 : 다음 양식 적용(자료기준일: 2023년 1학기, 이용 학생 수 및 이용 금액은 2023. 6. 30. 기준)

(단위: 명, 원, %)

기준연도	등록금 납부방법		실시 현황(4월)							이용 현황(8월)				
			최초 시행연도	금년도 실시여부	분납 개월수	분납 가능 횟수	분할납부제 관련 제한 여부			분할납부 시스템 서비스 여부	거래 카드사 수	이용 학생 수	이용 금액	학교부담 카드 수수료율
							장학금 수혜자 제한	행정사항						
								제 증명서 발급제한	장학금 지급 제한					
납부방법	분할													
	일시													
납부수단	계좌이체													
	학교창구													
	카드													
등록금 고지서 반영	분할납부제 표기 여부													
	카드납부제 표기 여부													
합계														

■ 작성지침

【분할】 : 월별분납, 분기납, 납부연기 등 등록금을 여러 차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

※ 분납 횟수나 분납 개월 수는 최댓값으로 표기

- ① 월별분납: 등록금을 월별로 분납하는 경우
- ② 분기납: 등록금을 분기별로 분납하는 경우

③ 납부연기: 등록금의 납입기일을 연장하는 경우

【계좌이체】 : 등록금의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(학교 대표계좌, 가상계좌, 인터넷뱅킹, 고지서 및 지로영수증을 통한 계좌이체 등 포함)

【학교창구】 : 대학 창구를 이용하여 오프라인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

【카드】 : 등록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

【학교부담 카드수수료율】 : 카드납부시 학교에서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율

※ 카드사가 둘 이상인 경우 평균으로 기재

【최초 시행연도】 : 등록금 납부제도별 최초 시행연도를 선택

【금년도 실시여부】 : 금년도에 실시한 경우 [예, 아니오] 중 [예] 선택

【분납 개월수】 : 해당 학기 개시 후 분할납부기간에 해당하는 개월 수

【분납 가능 횟수】 : 해당 학기 개시 이전 납부 횟수를 포함한 총 분할납부 횟수

※ 근거: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,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제4조(징수방법), 제5조(징수기일)

(예: 해당 학기 개시 후 3개월 동안, 해당 학기 개시 이전 납부 횟수를 포함하여 4회 나누어 납부할 경우, 분납 개월수는 3개월, 분납 횟수는 4회로 기재)

【분할납부제 관련 제한 여부】 : 분할납부 신청에 있어 제외되는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

① ‘장학금 수혜자’의 분할납부 신청 제외 대상 포함 유무

(예: 장학금 수혜자에 대해 분할납부 신청을 제한할 경우, 제한여부 ‘예’로 기재)

【행정사항】 : 분할납부 이용자에게 대학의 행정제재가 있는지 여부

① 제증명 발급 제한: 분할납부 신청자의 제증명 발급 제한 여부 또는 분납금 미납 또는 연체자의 제증명 발급 제한 여부

② 장학금 지급 제한: 분할납부 대상학생에게 (일시 납부 재학생과 차별적으로) 교내·외 장학금의 지급을 제한하는지 여부

【분할납부 시스템 서비스 여부】 : 온라인상에서 분할납부 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

【거래카드사 수】 : 카드납부 이용이 가능한 카드사 수

【등록금 고지서 반영】

① 고지서상 ‘금년도 실시여부’에 대한 고지여부

② 고지서상 ‘분납 개월수’에 대한 고지여부(매월 납부일 고지 여부)

③ 고지서상 ‘분납 가능횟수’에 대한 고지여부

④ 고지서상 ‘장학금 수혜자’에 대한 제한 사항 고지여부

⑤ 고지서상 ‘제증명서 발급 제한 유무’에 대한 고지여부

⑥ 고지서상 ‘장학금 지급 제한’에 대한 고지여부

⑦ 고지서상 ‘분할납부 시스템 서비스’에 대한 고지여부

⑧ 고지서상 ‘거래카드사’에 대한 고지여부

【이용학생 수】 : 2023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방법별 학부 및 대학원 이용학생 수의 합(2023. 6. 30. 기준)

【이용금액】 : 2023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방법별 학부 및 대학원 이용금액의 합(2023. 6. 30. 기준)

- ※ 등록금 납부 후 자퇴하여 일부 금액을 환불한 경우, 환불 후 남은 금액을 이용금액에 포함하여 입력
- ※ 선감면 장학금과 후지급 장학금이 있는 경우, 등록금 실수납액 기준으로 입력하며, 등록금 고지서상 선감면 장학금은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입력
(예: 등록금이 100만원이고 선감면이 20만원일 때, 학생이 등록금을 낼 때 80만원만 내므로 80만원 입력
등록금이 100만원이고 후지급이 20만원일 때, 후지급은 학생이 등록금을 100만원을 내고 추후에 지급하는 장학금이므로 100만원 입력)

■ 참고사항

-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
- 한국장학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
-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에서 등록금이란 입학금 및 수업료의 합계임